



##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10. 9. 1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수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행정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(개정 2021. 4.15)

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 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관장하고,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교수업적평가심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수합
2. 교수업적평가심사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증 및 판정
3. 교수업적평가심사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4.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보고
5. 평가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처리
6.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의 처리
7. 기타 교수업적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논의

제 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2/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결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6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 교수업적평가실시를 위한 세부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의 규칙문건으로 작성하여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별첨 누적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